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. 11. 25 선고 2022가단3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1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5.

## 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4. 6. 체결된 매매계약은 36,471,0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6,471,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강호

별지

1) 원고는 주문 제1항,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, 가집행의 선고는 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한다.